

국내·외 교류대학과의 학점 교환 인정에 관한 규정

제 정 1996. 2. 6.
 1차 개정 1996.10.11.
 2차 개정 2017.09.13.
 3차 개정 2018. 2. 1.
 4차 개정 2018. 6.12.
 5차 개정 2019. 4.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외 교류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한다.)과의 학점교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교류협력이 체결된 대학과 총장이 인정하는 대학에서 상호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2장 본교 학생의 교류대학 수학

제3조(지원자격) 교류대학에서의 수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2. 기 이수한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3. 학칙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외국대학에서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 언어에 능통한 자

제4조(지원) 지원자는 선발 공고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고 해당 학과장의 허락을 얻어 교류학생 선발 담당부서(이하 “선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류대학수학지원서 1부.
2. 연수계획서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참가자 서약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

6. 기타 교류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제5조(선발) ①선발부서의 장은 지원자의 지원서류, 교류대학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교류수학 대상자를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이를 최종 선발한다.

②교류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수학기간) 교류대학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수학허가) 교류대학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본교에 통보한다.

제8조(등록) ①교류대학에서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류대학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의 교류수학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는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수강신청은 학기별로 국내 교류대학에서 12학점 이상, 국외 교류대학에서 6학점 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학점 인정의 제한) ①교직영역의 학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교류대학 개설 교과목의 학점이 우리대학 대체교과목의 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류대학에서 개설된 복수의 유사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합산하여 우리대학 대체교과목의 학점에 상응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③교류대학에서 P/F로 평가하는 교과목을 우리대학에서 등급제로 평가하는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성적표에 교류대학의 성적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기재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④교류대학에서 이러닝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학점을 우리대학 일반 강의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교류대학에서 이러닝과 일반 강의를 병행하는 교과목으로, 이러닝 강의를 제외한 일반 강의 수업시수가 우리대학 대체교과목의 총수업시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이러닝 개설 교과목이 우리대학 핵심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⑤유럽에서 취득한 ECTS 학점체제는 과목별 이수 단위의 2/3를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서와 수학계획서의 제출) ①교류대학에서 수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개강 후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학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교류대학에서의 이수 예정 교과목의 과목해설서와 강의계획서 원본(외국 대학의 경우 번역문 별첨)

②단,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는 개설학과를 각 경유하여 선발부서에 제출한다.

③국내·외 교류대학 대체교과목 인정 학점은 학기당 최대 21학점 이하의 범위까지 신청 할 수 있다.

④부득이하게 교류대학의 이수 교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교과목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대체교과목의 사전 인정) 대체교과목의 사전 인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①대체희망교과목의 개설학과 학과장은 지원자가 제출한 제11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심의하며, 대체교과목 인정 여부를 표기하여 학생에게 통보한다.

②제11조의 서류는 선발부서에서 교무처로 송부하며, 교무처장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대체교과목의 인정을 신청한다.

제13조(취득학기 및 학점의 인정) ①수학기간이 완료된 학생 중 교류학점 인정을 신청할 학생은 즉시 교류학점 인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교류대학에서 득한 성적증명서를 선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과 같이 성적표에 등재한다.

1. 교류대학에서 백분위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등재한다.
2. 교류대학에서 백분위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성적변환표에 근거하여 본교 성적체계로 변환하여 등재하며, 교류대학에 성적변환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별표]에 따라 등재한다.
3. 교류대학에서 백분위 점수를 구간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구간 점수의 중간값을 등재한다.
4. 위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류대학의 평가체계를 고려하여 환산 등재한다.

5. 복수의 교과목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성적 x 과목별 학점 수)의 합 / 총 학점 수를 등재한다.

③교류대학에서 이수하고 학점 인정을 받은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의 등재는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것임을 표시(“교류”)하고 합산·처리하며, 해당 학기의 석차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이수)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류수학의 취소) ①학기 개시 후 교류수학의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우리 대학 수업일수 4분의2 이내에 교류수학 취소원을 선발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류수학취소 당해학기는 휴학 처리된다.

②제1항의 교류수학 취소신청원은 교류대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장 교류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17조(지원자격)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류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지원) ①교류대학은 지원자를 소정의 기한 내에 본교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교류학생으로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류대학을 경유하여 본교 선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2. 재학 증명서
3. 지도교수 추천서
4.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9조(수학기간) 교류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정규학기를 수학할 수 있는 기간은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학허가) 본교 선발부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자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하고 학기 개시 3주 전(외국 대학의 경우 1개월)전까지 소속대학에 이를 통보한다.

제21조(수강신청) 수강신청, 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는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2조(취득학점) ①교류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학기당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교류대학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류대학 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은 수학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류대학에 통보한다.

③제2항의 취득 학점에 대하여 교류대학 및 교류학생의 요청에 따라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학생증 발급 및 시설물 이용) 본교에서 수학을 허가받은 교류학생은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학기간 중 도서관, 실험실습실, 서록관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교류수학의 취소) ①수학허가를 받은 교류대학 학생이 수학기간 중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본교에서의 수학취소를 원하는 교류대학 학생은 교류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류대학에 수학취소의사를 표시하며, 본교로 교류대학의 수학취소통보가 도달하면 수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학취소는 우리대학 수업일수 4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6. 2. 6)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을 제정하기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국외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거나 유학을 종료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

이 규정은 199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이 규정은 2017년 2학기 교류선발자부터 적용한다. (2017. 09. 13.)

부 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2018. 2. 1.)

부 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2018. 6. 12.)

제2조(취득학기 및 학점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2학기 교류 선발자에게 적용한다.(2018. 6. 12.)

부 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2019. 4. 23.)

제2조(취득학기 및 학점의 인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2학기 교류자에게 적용한다.(2019. 4. 23.)

[별표] 서울교육대학교 성적변환표

환산점수(100점)	4.5만점일 경우	4.3만점일 경우	4.0만점일 경우
	평균 평점	평균 평점	평균 평점
100	4.50	4.30	4.00
99.8	4.48	4.29	3.99
99.6	4.46	4.28	3.98
99.4	4.44	4.27	3.97
99.2	4.42	4.26	3.96
99	4.40	4.25	3.95
98.8	4.38	4.24	3.94
98.6	4.36	4.23	3.93
98.4	4.34	4.22	3.92
98.2	4.32	4.21	3.91
98	4.30	4.20	3.90
97	4.20	4.10	3.80
96	4.10	4.00	3.70
95	4.05	3.90	3.60
94	4.0	3.80	3.50
93	3.9	3.70	3.40
92	3.8	3.60	3.30
91	3.7	3.50	3.20
90	3.6	3.40	3.10
89	3.5	3.30	3.00
88	3.4	3.20	2.90
87	3.3	3.10	2.80
86	3.2	3.00	2.70
85	3.1	2.90	2.60
84	3.0	2.80	2.50
83	2.9	2.70	2.40
82	2.8	2.60	2.30
81	2.7	2.50	2.20
80	2.6	2.40	2.10
79	2.5	2.30	2.00
78	2.4	2.20	1.90
77	2.3	2.10	1.80
76	2.2	2.00	1.70
75	2.1	1.90	1.60
74	2.0	1.80	1.50
73	1.9	1.70	1.40
72	1.8	1.60	1.30
71	1.7	1.50	1.20
70	1.6	1.40	1.10
69	1.5	1.30	1.09
68	1.4	1.20	1.08
67	1.35	1.10	1.07
66	1.3	1.09	1.06
65	1.25	1.08	1.05
64	1.2	1.07	1.04
63	1.15	1.06	1.03
62	1.1	1.04	1.02
61	1.05	1.02	1.01
60	1.0	1.00	1.00

※ 교류대학 성적표에 백분위 점수가 표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1호]

교류대학 수학계획서

교류대학명	대학교			계획학기	20 . . . ~ 20 . . .		
소속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	학년		기이수학기	
학번		성명		연락처			
주소							

• 영역 : 서울교육대학교 수강과목 분류에 준하여 교양/교직/전공으로 작성

수학기간	20 년 학기
------	---------

연 번	교류대학 이수 예정 교과목			본교 대체인정 신청 교과목			개설학과
	영약	학점	교과목명	영약	학점	교과목명	
1							
2							
3							
4							
5							
6							
7							
8							
9							
10							
11							
계		총 ()과목, ()학점		총 ()과목, ()학점			

* 첨부물

1. 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서 각 1부(개설학과별).
2. 과목해설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외국 대학의 경우 번역문 별첨)

위와 같이 교류대학 수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학점교류에 따른 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서

※대체를 희망하는 교과목의 개설학과별로 1장씩 작성하여 제출.

※첨부물 : 과목해설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외국 대학의 경우 번역문 별첨)

교류대학명	대학교			계획학기	20 . . . ~ 20 . . .		
소속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	학년		기이수학기	
학번		성명		연락처			
주소							

- ※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점이 본교 대체교과목의 학점에 미달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이러닝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단, 이러닝+대면강의 과목은 팔호안에 대면강의 해당학점을 별도 기재 예) 3(2)

수학기간	20 년 학기
------	---------

개설학과 (택1, ☒ 표)		☐ 윤리교육과 ☐ 국어교육과 ☐ 사회과교육과 ☐ 수학교육과 ☐ 과학교육과 ☐ 체육교육과 ☐ 음악교육과 ☐ 미술교육과 ☐ 생활과학교육과 ☐ 초등교육과 ☐ 영어교육과 ☐ 컴퓨터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 교무처 수업팀 (교육실습 등)					
		교류대학 이수 예정 교과목		본교 대체인정 신청 교과목		개설학과 확인	
연 번	영약	학점	교과목명	영약	학점	교과목명	인정여부(O/X)
1							
2							
3							
4							
5							
6							
7							
8							
9							
10							
11							
계		총 ()과목, ()학점		총 ()과목, ()학점			
				학과장		(인)	

위와 같이 개설학과의 승인을 받아 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